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김지훈(국)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3. 10.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 김지훈(국) 의원 등 열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 등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3조)
- 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사.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 아.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보험·공제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제2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정보통신과

라. 입법예고 : 2023. 10. 11. ~ 2023. 10. 17. (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붙임 1. 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유출 피해 규모 현황

3.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 추가자료 1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자체 : 38개 시군 조례 제정 (특별시,광역시 등 12개 포함)
- 경기도 지자체 제정 현황

[표1-1] 경기도 주요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13개 지자체(본청 포함)

연번	지자체	조례명	공포일자
1	경기도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07.18
2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07.13
3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03.12
4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3.08.09
5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2.05.19
6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06.21
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07.12
8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08.10
9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2023.04.07
10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1.06.30
11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02.07
12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07.05
13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2023.04.10

■ 추가자료 2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유출 피해규모

[표1-2]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유출 피해규모

연도	유출 신고·인식 건수	지자체 종류	유출 건수	연도별 유출 건수
2020 (8.5. 이후)	1건	기초자치단체	66	66
2021	7건	광역자치단체	1,150	64,003
		기초자치단체	1,488	
		기초자치단체	15,460	
		기초자치단체	31,528	
		기초자치단체	4,303	
		기초자치단체	6,568	
		지방교육행정기관	3,506	
2022	5건	광역자치단체	11,731	17,538
		광역자치단체	1,664	
		기초자치단체	1,101	
		기초자치단체	1,836	
		기초자치단체	1,206	
2023	5건	광역자치단체	100	2,972,817
		기초자치단체	1,451	
		기초자치단체	2	
		지방교육행정기관	4,779	
		지방교육행정기관	2,966,485	
합계	18		3,054,524	

▣ 추가자료 3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2022. 7. 14.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요약)

1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 증가
 - 공공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결될 필요
 - 하지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도 심각

- ▶ (송파 살인 사건) 수원시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피해자 주소를 출신소에 유출 → 이를 취득한 이OO이 피해자의 가족 살해(21.12.)
- ▶ (n번방 사건) 조OO의 공범인 수원시 사회복지요원이 다른 공무원 계정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취득 유출 → 피해자 협박(19.)

⇒ 동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안전 활용을 위한 든든한 토대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개인정보 규모) 230개 이상 공공기관은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21)
- (시스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은 16,199개(20.12.)로 ①다수 기관 사용 공통 시스템과 ②단일 기관 사용 개별 시스템으로 구분

구분	시스템 수	정의	사례
공통 시스템	3,996	다수 기관의 공통·유사한 업무를 지원	-
단일접속	112	단일 시스템을 복수의 기관이 함께 이용	주민등록시스템
표준배포	3,884	표준 사양에 맞춰 기관별로 시스템 구축·이용	건축행정시스템
개별 시스템	12,203	단일 기관 업무용으로 개발·구축	홈택스

※ 송파 살인, n번방 사건 모두 개인정보 규모 천만건 이상인 단일접속 시스템 이용

2 문제점

❖ 수원시 유출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산하기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점검('22.1.~5.)을 통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문제점 도출

○ **(기술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경향

- 취급자 계정 권한 현행화가 소홀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형식적으로 접속기록을 점검하여 비정상적 접근 시도 탐지 미흡

- ▶ 업무와 무관하게 전 국민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 시스템 다수, 권한 현행화 지연이 43%
- ▶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률이 56%에 불과하고, 수기 점검만 가능한 경우도 약 15%

○ **(관리적)** 시스템 개발·운영이 여러 단계에 걸친 위수탁 구조가 대부분이고, 다수 기관이 이용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 특히 지자체의 관리체계가 취약하여 사고가 지속 발생

- ▶ 접속기록 점검은 대부분 운영기관이 하고, 주 이용기관인 지자체의 직접 점검은 1%

○ **(보호기반)**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나 제재는 낮고, 인력·투자 미흡



- ▶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가 있는 기관은 3.8%, 전담 인원은 평균 0.5명에 불과
- ▶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1천만원 미만이 54.6%

3 개선 방안

① 공공부문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 강화

○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22.下)

- 전체 시스템 16,199개 중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 취약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시스템 예비 선정

합계		공통 시스템				개별 시스템	
		단일접속		표준배포			
시스템	기관	시스템	기관	시스템	기관	시스템	기관
1,608	327	47	12	1,418	245	143	70

※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기준(안)>

△개인정보 보유량(100만명 이상)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효과(주민등록 연계 건강의료, 교육 등 민감정보 보유 시스템 등)

△취급자수(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등)

- 상세 현황 조사 후 부처 협의를 거쳐 집중 관리 대상 시스템 확정('22)

○ 3단계 안전조치의무 부과('22~'24 「집중관리 시스템」 우선 적용)

① (접근권한 관리) 취급자 계정 발급 엄격화, 접근권한 최소화('22)

- 취급자 계정과 인사정보 시스템 연동 추진('23~'24)

② (접속기록 점검) 취급자 접속기록을 보관·분석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22~'24)

※ 공공부문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률 56%, 평균 구축비 약 4천3백만원

③ (승인·소명·통지) 상급자 등의 승인·소명 및 개별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 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단계적 마련('22~'24)

⇒ ('22~'24년) 집중관리 시스템에 우선 적용

('23년 말)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고시) 제정

('24~'25년)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 의무화

② 사각지대 없는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 **(부처)** 「집중관리 시스템」 소관 부처에 ‘부처 + 운영기관 + 이용기관’을 포괄하는 시스템별 통합 관리체계 구축(22.下)
 - 부처 주관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개별 시스템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수립
- **(이용기관)** 주 이용기관인 지자체에 취급자 계정 접속기록 점검, 취급자 관리·감독 의무 부과 등 이용기관의 책임과 역할 구체화(23)
 - 관리체계가 취약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마련을 위해 표준조례안 제공(22.6.)
 -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있는 지자체 23개(9%)

③ 위반행위 제재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 **(처벌)** 개인정보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하는 징계 처리 강화안을 마련(22)하여 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예규·편람에 반영(23)
 - 공무원이 고의 유출 시 가중처벌 검토, 취급자가 개인정보 부정 이용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등에 과태료·과징금을 적극 부과하여 경각심 제고(기 시행)
- **(인프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23)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단계적 확충(23~24)
 - 정보화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 추진

4 향후 계획

- 현황 조사를 거쳐 「집중관리 시스템」을 확정하고, 기획점검 착수(22.下)

[표1-2]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유출 피해규모 (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유출 피해규모

연도	유출 신고·인지 건수	지자체 종류	유출 건수	연도별 유출 건수
2020 (8.5. 이후)	1건	기초자치단체	66	66
2021	7건	광역자치단체	1,150	64,003
		기초자치단체	1,488	
		기초자치단체	15,460	
		기초자치단체	31,528	
		기초자치단체	4,303	
		기초자치단체	6,568	
		지방교육행정기관	3,506	
2022	5건	광역자치단체	11,731	17,538
		광역자치단체	1,664	
		기초자치단체	1,101	
		기초자치단체	1,836	
		기초자치단체	1,206	
2023	5건	광역자치단체	100	2,972,817
		기초자치단체	1,451	
		기초자치단체	2	
		지방교육행정기관	4,779	
		지방교육행정기관	2,966,485	
합계	18		3,054,524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

양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 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법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3.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비용발생 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장 이철영